

의안번호	2126634
의 퇴 인	김진표의원
회 답 일	2024.04.05.
추계번호	24D02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법제위원회를 분리·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1억 8,500만원, 2026년 11억 6,1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9억 5,400만원(연평균 11억 9,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평균
안 제37조제1항(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3호 신설	1,185	1,161	1,182	1,202	1,223	5,954	1,191

주: 본 추계 결과는 21대국회 의안접수 건수와 타 상임위원회 인력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법제위원회 증원인력 및 사업비, 현 법제사법위원회 인력 재배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7조제1항(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3호 신설	법제사법위원회를 사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다른 소관사항은 그대로 두되,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되는 법제위원회에서 전담하도록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1항제3호 법제위원회 신설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법제위원회 분리·신설에 따른 증원인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안접수 건수(21대국회 기준)와 유사한 타 상임위원회의 인력 등을 비교하여 추정함¹⁾
- 법제위원회를 분리·신설함에 따라 회의공간 및 사무실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회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에 대한 재정소요는 추계에서 제외함²⁾
-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하며, 2025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³⁾

1) 국회의원 수는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으로, 본 추계에서는 국회의원 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2) 국회 예산 중 ‘국회청사유지및관리(2033-300)사업’ 예산으로 약 420억원(2022년 425억원, 2023년 427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법제위원회 신설에 따른 회의실 및 사무공간 확보에 별도의 추가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3.10)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4%	2.4%	2.2%	2.2%	2.1%	2.1%	2.1%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법제위원회 분리·신설(안 제37조제1항제3호 신설)

- 본 추계에서는 법제위원회를 사법위원회와 분리·신설하는데 따른 증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등 및 사업비를 추계함
- (소요인력 추정) 타 상임위원회 사례 등을 참고하여 법제위원회 소요인력은 수석전문위원 1명, 전문위원 2명, 입법조사관 10명(행정실장 1명 포함), 6급이하 행정지원 인력 6명 등 총 19명으로 가정함
 - 법제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 1명과 전문위원 2명으로 구성하되⁴⁾, 수석 및 전문위원별로 3명의 입법조사관을 두는 것으로 가정함⁵⁾
 - (전문위원 3명) 수석전문위원 1명, 전문위원 2명
 - (행정실 4명) 행정실장 1명, 행정관 1명, 행정지원인력 2명
 - (입법조사관 등 12명) 수석 및 전문위원별 각 입법조사관 3명, 각 행정지원인력 1명

[표 2] 법제위원회 소요인력(추정)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1)	전문위원(2)	행정실
인력	입법조사관 3명 행정지원인력 1명	입법조사관 3명 행정지원인력 1명	입법조사관 3명 행정지원인력 1명	행정실장 1명 행정관 1명 행정지원인력 2명 (행정보조요원 1명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최근 매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석전문위원 1명과 전문위원 2명을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별로 약 5~6개의 상임위원회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게 됨

5) 17개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수는 43명, 입법조사관(입법심의원 포함)은 156명으로, 수석·전문위원 1명당 약 3.6명으로, 본 추계에서는 수석·전문위원 1명당 입법조사관은 3명으로 가정함

- (현 법제사법위원회 인력 재배치 인원 추정)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을 신설되는 법제위원회에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의안건수가 유사한 타 상임위원회 인력 등을 비교하여 재배치 인력을 산출함
- 법제사법위원회 정원은 32명으로 21대국회때 접수된 의안건수는 2024년 4월 2일 기준 2,165건이며, 의안건수가 유사한 타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2,371건), 환경노동위원회(2,166건), 국토교통위원회(2,343건)가 있고, 세 위원회의 정원은 각각 19~22명이므로, 법제사법위원회 정원(32명) 중 약 30%가 체계·자구 심사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이에 본 추계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정원 32명 중 10명을 법제위원회에 재배치하기로 함

[표 3]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정원 및 의안 접수건수 현황

(단위: 명, 건)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원(2023. 8. 현재)	32	22	19	22
제21대국회 의안 접수건수(2020.5.~2024.4.)	2,165	2,371	2,166	2,343

자료: 「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2023.9.18) 및 의안정보시스템

- 법제사법위원회 고유업무수행 인력을 제외한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및 행정지원인력 직위별 정원에 재배치인력 비율(30%)을 적용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4] 법제사법위원회 정원 및 재배치인력(추정)

(단위: 명)

		현행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정원	사법위원회 재배치 인력(70%)	법제위원회 재배치 인력(30%)
직위별 정원	수석전문위원	1	1	0
	전문위원	3	2	1
	행정실장	1	1	0
	입법조사관	16	10	6
	입법조사관보	1	1	0
	행정관	2	1	1
	행정지원인력	7	5	3
	행정지원보조	1	1	0
합 계		32	22	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순증인력) 상기 전제를 바탕으로 법제위원회 분리·신설에 따른 직급별 증원인력⁶⁾은 다음 표와 같음

- 순수 증원인력 9명에 대한 직급배분은 수석 및 전문위원 각 1명, 행정실장 4급 1명, 입법조사관 5급 2명, 입법조사관보 6급 1명⁷⁾, 행정지원인력 8급 2명⁸⁾, 행정보조요원(별정직 9급상당)⁹⁾ 1명으로 함

[표 5] 법제위원회 직급별 순증인력 추정

(단위: 명)

	수석 전문위원	2급 (전문 위원)	4~8급(8명)					9급(별정직) (행정보조 요원)	합계
			4급 (행정실장)	5급 (입법조사관)	6급 (입법조사관보)	6급 (행정관)	8급 (행정지원인력)		
소요인력(A)	1	2	1	8	1	1	4	1	19
법사위 재배치인력(B)	0	1	0	6	0	1	2	0	10
순증인력(A-B)	1	1	1	2	1	0	2	1	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입법조사관은 부이사관·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입법조사관을 최하위 직급인 행정사무관으로, 입법조사관 중에 행정실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장은 서기관으로 가정함

7) 각 위원회에서 입법조사관보를 두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입법조사관 1명을 입법조사관보 6급 1명으로 대체하여 배치함

8) 행정관 직급과 행정지원인력 직급은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 6급과 8급으로 함

9) 각 위원회 별로 행정보조요원(별정직 9급상당) 각 1명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함

□ (인건비 등) 9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은 공무원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¹⁰⁾

○ 공무원 보수는 2024년 국회 각목명세서를 참고¹¹⁾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4년 2월)한 공무원임금상승률을 반영하고, 기관부담금과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기관부담금 비율, 공무원 1인당 자산취득비를 적용하며, 기본경비는 국회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8.2%)을 고려하여 산출하면 다음 표와 같음

- 공무원 보수는 기본연봉 및 봉급에 최근 3년(2022~2024)간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1.9%를 적용하고, 수당(입법수당 등)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 기관부담금(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무원 보수에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요율¹²⁾을 적용하여 산출함
- 자산취득비는 2025년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증원인력 9명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4년 2월)한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¹³⁾를 곱하여 산출함

[표 6] 증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2025~2029)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보수	763	775	787	799	812	3,936
기관부담금	100	102	105	107	110	524
기본경비	63	64	65	66	67	323
자산취득비	44	0	0	0	0	44
합계	969	941	956	972	988	4,82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0) 법제위원회 추정인원 19명 중 증원인력 9명에 대한 인건비등을 추계하며, 나머지 10명에 대한 인건비 등은 기존 인건비등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함

11) 2024년 국회 예산 각목명세서 기준 수석전문위원 1억 5,250만원, 전문위원(2급) 1억 4,250만원, 4급 1억 190만원, 5급 8,220만원, 6급 7,270만원, 8급 4,580만원, 행정보조요원(별정직 9급상당) 4,170만원이고, 이 중 수석전문위원 및 4~5급은 기본연봉, 입법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6~9급은 봉급, 입법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명절수당을 포함한 금액임

12)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2024. 2.)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기관부담률	13.114%	13.210%	13.305%	13.399%	13.494%

13) 2025년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는 4,893,000원임

- (사업비) 사업비는 17개 상임위원회 운영경비(2024년) 평균값 2억 1,100만원¹⁴⁾으로 가정하고, 동 사업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4년 2월)한 소비자물가상승률¹⁵⁾을 적용하여 추계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7] 법제위원회 사업비(2025~2029)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사업비	216	221	225	230	235	1,12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추계결과

- 법제위원회를 분리·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1억 8,500만원 등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총 59억 5,4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2025~2029)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보수	763	775	787	799	812	3,936
기관부담금	100	102	105	107	110	524
기본경비	63	64	65	66	67	323
자산취득비	44	0	0	0	0	44
사업비	216	221	225	230	235	1,127
합계	1,185	1,161	1,182	1,202	1,223	5,9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4) 신설되는 법제위원회의 직원 정원 규모를 고려하여 17개 상임위원회 운영경비의 평균값을 적용하였음.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경비는 11억 9,500만원으로 평균값에서 제외함

15) 2024년 2.7%, 2025년 2.4%, 2026년 2.1%, 2027년 이후부터는 2.0%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21대국회 의안접수 건수와 타 상임위원회 인력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법제위원회 증원인력 및 사업비, 현 법제사법위원회 인력 재배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